

' 96. 5. 22.

'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 제안설명서

충 청 북 도 보 건 환 경 연 구 원

'96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(안) 제안설명서

- 안녕하십니까?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.
- 먼저 교육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'96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(안)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'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9천 6백 9만 5천원 으로 이것은 당초예산 2십 1억 2천 7백 8십 4만 4천원 에 비하여 4.5% 증가된 금액입니다.
- 이에 대한 과목별 예산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
 - 경상예산 인건비 1천 8백 1만 8천원 과 일반업무추진비 6백 3십만원
- 그리고 복리 후생비 4백 4십 7만 3천원 등 2천 8백 7십 9만 1천원을
- 본 추경예산(안)에 계상한 것은 전임원장의 공로연수로 인한 증액 분입니다.

■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,

저희 연구원에서 기 확보 사용중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ECD가 장착된 장비는

방사선동위원소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미량이기는 하지만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므로 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이 노출된량을 관독하고 동력자원부로 부터

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를 심사받는 한편

□ 종사자의 건강진단까지 받아야하는등 원자력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를 이행하도록

되어있습니다.

□ 그러므로 방사선 필름 관독비 12만 4천원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심사비 56만원,

건강진단비 12만원등 총 8십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.

■ 마지막으로 자체신규사업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토양오염보전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96년 7월 부터 본원에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와
- 도내전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별로 측정지점을 정하여 매년 1 회씩 상시측정 하는 토양오염 측정망을 설치 운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- 96년 하반기 부터 시작되는 토양 오염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출기에 FID와 ECD 가 내장된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1대, 농축장치인 퍼지앤드 트랩장치 1 대, 진탕기 1 대 그리고 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1대등 총 5천 8백 5십만원을 본 추경예산(안)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.

■ 다음은 인증기로서

본연구원에서는 연간 약 6억원의 각종 검사 수수료를 도수입증지로 징구하였으나 道 「지방수입증지 판매제도 개선계획」에 따라 앞으로는 인증기로 인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증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.

- 본추경예산(안)에 계상된 각항목별 예산은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임 원장의 인건비와 이에 관련된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입니다.
- 그리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장비 구입비입니다.
-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.
- 감사합니다.